

『구미 동락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2020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난개발방지 및 장기미집행 도시공원(동락공원)조성을 위하여 『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』 제21조의 2(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)에 따라 민간제안으로 공원면적의 70%이상을 기부채납, 30%이하는 비공원시설로 개발
- 구미 동락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구미시와 민간공원추진자 간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협약을 체결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- 협약당사자의 권리·의무에 관한 사항(안 제2장)
-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(안 제3장)
 - 제8조 ~ 제10조 기부채납의 대상·시기·조건
-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(안 제4장)
 - 제11조 보상비 등 납입
- 감정평가 및 보상에 관한 사항(안 제6장)
 - 제14조 ~ 제15조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, 보상시행 및 정산

○ 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9장)

- 제18조 ~ 제25조 설계·인허가, 실시계획인가, 공사기간, 공사의 착수,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, 공정관리, 사업이행보증금, 구미시의 감독

○ 구미시의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10장)

- 제26조 ~ 제27조 행정적 지원 등,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등

○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(안 제11장)

- 제28조 ~ 제31조 위험배분의 원칙, 민간공원추진자의 귀책사유 및 처리, 구미시의 귀책사유 및 처리, 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

○ 협약의 종료(안 제12장)

- 제32조 ~ 제35조 기간만료로 인한 협약의 종료, 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, 협약해지시의 조치, 해지에 따른 정산

○ 권리의 처분(안 제13장)

- 제36조 ~ 제37조 양도 및 담보의 제공, 민간공원추진자의 변경

○ 분쟁의 해결(안 제14장)

- 제38조 ~ 제40조 분쟁의 해결, 출자지분의 변경, 중재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 2
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불임)

- 합 의 :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「구미 동락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」은

- 2020년 7월 1일자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됨에 따라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2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조항에 의거 동락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미시와 민간공원 추진자 간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협약을 체결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,
- 동락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도시공원 및 구미시립미술관 등 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되어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, 지상 65층 1,344세대의 공동주택이 건립되므로 공단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